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9.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윤 의원 대표발의)

1. 제 안 이 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인권증진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안 제3조)
- 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라. 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마. 2차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참 고 자 료

가. 관련법령 : 『스토강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강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집행부 의견조회

라. 입법예고 : 2023. 11. 9. ~ 11. 15 .(6일간)

마. 기 타

1) 제정 조례안

2)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2차 피해방지)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